

(1) 기타재산이자수입

54 - 546

< 방송통신발전기금 >

(단위: 백만원, %)

목명	2020년 결산	2021년		2022년		증감 (B-A)	(B-A)/A
		당초	수정(A)	당초	수정(B)		
기타재산이자 수입	7,189	1,467	1,467	1,200	1,200	△267	△18.2

1. 법적 근거

- 방송통신발전기본법 제25조(기금의 조성)

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. 1. 정부의 출연금 또는 용자금 2. 「전파법」 제7조제2항에 따른 징수금, 같은 법 제11조제1항(같은 법 제16조제4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)에 따른 주파수할당 대가 및 같은 법 제11조제5항에 따른 보증금, 같은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산정된 금액 3.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분담금 4. 방송사업자의 출연금 5. 기금 운용에 따른 수익금 6.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금
--

2. 수입 개요

- 기금운용계획의 수입 및 지출에 따른 사업 대기성 여유자금운용 이자수입

3. 최근 4년간 결산내역

(단위: 백만원)

연도	2018년	2019년	2020년	2021년
수납액	3,646	6,124	7,189	2,366

(2) 법정부담금

59 - 593

< 방송통신발전기금 >

(단위: 백만원, %)

목명	2020년 결산	2021년		2022년		증감 (B-A)	(B-A)/A
		당초	수정(A)	당초	수정(B)		
법정부담금	662,900	1,002,004	1,002,004	628,610	628,610	△373,394	△37.3

1. 법적 근거

○ 방송통신발전기본법 제25조(기금의 조성)

<p>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된다.</p> <p>2. 전파법 제7조 제2항에 따른 징수금, 같은 법 제11조 제1항(같은 법 제16조 제4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)에 따른 주파수할당 대가 및 같은 법 제11조 제5항에 따른 보증금, 같은 법 제17조 제2항에 따라 산정된 금액</p> <p>3. 제2항부터 제4항까지 규정에 따른 분담금</p> <p>②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법에 따른 지상파방송사업자 및 종합편성 또는 보도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로부터 전년도 방송광고매출액에 그 100분의 6의 범위에서 방송통신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징수율을 곱하여 산정한 분담금을 징수할 수 있다.</p> <p>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방송법에 따른 종합유선방송사업자, 위성방송사업자 및 인터넷 멀티미디어방송사업법에 따른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제공사업자로부터 전년도 방송서비스 매출액에 그 100분의 6의 범위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징수율을 곱하여 산정한 분담금을 징수할 수 있다.</p> <p>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상품 소개와 판매에 관한 전문편성을 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로부터 전년도 결산상 영업이익에 그 100분의 15의 범위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징수율을 곱하여 산정한 분담금을 징수할 수 있다.</p>
--

2. 수입 개요

○ 방송사업자 부담금(186,641백만원) 및 통신사업자 주파수할당대가(441,969백만원)

3. 최근 4년간 결산내역

(단위: 백만원)

연도	2018년	2019년	2020년	2021년
수납액	952,011	687,320	662,900	998,632

(3) 기타경상이전수입

59 - 596

< 방송통신발전기금 >

(단위: 백만원, %)

목명	2020년 결산	2021년		2022년		증감 (B-A)	(B-A)/A
		당초	수정(A)	당초	수정(B)		
기타경상 이전수입	34,686	40,782	40,782	53,654	53,654	12,872	31.6

1. 법적 근거

- 방송통신발전기본법 제25조(기금의 조성)

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.

1. 정부의 출연금 또는 용자금
2. 「전과법」 제7조제2항에 따른 징수금, 같은 법 제11조제1항(같은 법 제16조제4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)에 따른 주과수할당 대가 및 같은 법 제11조제5항에 따른 보증금, 같은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산정된 금액
3.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분담금
4. 방송사업자의 출연금
5. 기금 운용에 따른 수익금
6.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금

2. 수입 개요

- 기금사업비 집행잔액 · 정산환수금 · 기술료 등

3. 최근 4년간 결산내역

(단위: 백만원)

연도	2018년	2019년	2020년	2021년
수납액	36,204	28,163	34,705	49,755

(4) 통화금융기관예치금회수

85 - 852

< 방송통신발전기금 >

(단위: 백만원, %)

목명	2020년 결산	2021년		2022년		증감 (B-A)	(B-A)/A
		당초	수정(A)	당초	수정(B)		
통화금융기관 예치금회수	25,000	14,230	14,230	97,587	97,587	83,357	585.8

1. 법적 근거

- 방송통신발전기본법 제25조(기금의 조성)

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.

1. 정부의 출연금 또는 용자금
2. 「전과법」 제7조제2항에 따른 징수금, 같은 법 제11조제1항(같은 법 제16조제4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)에 따른 주과수할당 대가 및 같은 법 제11조제5항에 따른 보증금, 같은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산정된 금액
3.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분담금
4. 방송사업자의 출연금
5. 기금 운용에 따른 수익금
6.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금

2. 수입 개요

- 전년도('21년)말 통화금융기관(시중은행 등)에 예치한 여유자금 회수액

3. 최근 4년간 결산내역

(단위: 백만원)

연도	2018년	2019년	2020년	2021년
수납액	10,000	100,000	25,000	36,000

(5) 비통화금융기관예치금회수

85 - 853

< 방송통신발전기금 >

(단위: 백만원, %)

목명	2020년 결산	2021년		2022년		증감 (B-A)	(B-A)/A
		당초	수정(A)	당초	수정(B)		
비통화금융기관 예치금회수	22,584	9,486	9,486	82,936	82,936	73,450	774.3

1. 법적 근거

- 방송통신발전기본법 제25조(기금의 조성)

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.

1. 정부의 출연금 또는 용자금
2. 「전과법」 제7조제2항에 따른 징수금, 같은 법 제11조제1항(같은 법 제16조제4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)에 따른 주과수할당 대가 및 같은 법 제11조제5항에 따른 보증금, 같은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산정된 금액
3.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분담금
4. 방송사업자의 출연금
5. 기금 운용에 따른 수익금
6.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금

2. 수입 개요

- 전년도('21년)말 비통화금융기관(증권사 등)에 예치한 여유자금 회수액

3. 최근 4년간 결산내역

(단위: 백만원)

연도	2018년	2019년	2020년	2021년
수납액	80,778	316,319	22,584	83,529

(6) 기금예탁원금회수

92 - 923

< 방송통신발전기금 >

(단위: 백만원, %)

목명	2020년 결산	2021년		2022년		증감 (B-A)	(B-A)/A
		당초	수정(A)	당초	수정(B)		
기금예탁 원금회수	350,000	90,000	90,000	-	-	△90,000	순감

1. 법적 근거

- 방송통신발전기본법 제25조(기금의 조성)

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.

1. 정부의 출연금 또는 용자금
2. 「전파법」 제7조제2항에 따른 징수금, 같은 법 제11조제1항(같은 법 제16조제4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)에 따른 주파수할당 대가 및 같은 법 제11조제5항에 따른 보증금, 같은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산정된 금액
3.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분담금
4. 방송사업자의 출연금
5. 기금 운용에 따른 수익금
6.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금

2. 수입 개요

- 기획재정부 공공자금관리기금에 예탁원금중 당해연도 만기 도래하는 원금 회수액

3. 최근 4년간 결산내역

(단위: 백만원)

연도	2018년	2019년	2020년	2021년
수납액	100,000	100,000	350,000	-

(7) 기금예수금

94 - 943

< 방송통신발전기금 >

(단위: 백만원, %)

목명	2020년 결산	2021년		2022년		증감 (B-A)	(B-A)/A
		당초	수정(A)	당초	수정(B)		
기금예수금	207,389	282,729	282,729	526,964	526,964	244,235	86.4

1. 법적 근거

○ 방송통신발전기본법 제25조(기금의 조성)

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.

1. 정부의 출연금 또는 융자금
2. 「전과법」 제7조제2항에 따른 징수금, 같은 법 제11조제1항(같은 법 제16조제4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)에 따른 주과수할당 대가 및 같은 법 제11조제5항에 따른 보증금, 같은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산정된 금액
3.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분담금
4. 방송사업자의 출연금
5. 기금 운용에 따른 수익금
6.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금

○ 방송통신발전기본법 시행령 제11조(수입금)

법 제25조제1항제6호에서 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금”이란 다음 각 호의 수입금을 말한다.

1. 기금의 자산에 속하는 국유재산을 운용하여 발생하는 수익금
2. 법 제25조제7항에 따른 가산금
3. 차입금
4. 그 밖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방송통신위원회가 인정하는 수입금

2. 수입 개요

○ 방송통신발전기금의 수입 부족분에 대한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 부터의 예수금

3. 최근 4년간 결산내역

(단위: 백만원)

연도	2018년	2019년	2020년	2021년
수납액	-	-	207,389	282,729

(8) 기금예탁이자수입

95 - 953

< 방송통신발전기금 >

(단위: 백만원, %)

목명	2020년 결산	2021년		2022년		증감 (B-A)	(B-A)/A
		당초	수정(A)	당초	수정(B)		
기금예탁 이자수입	1,167	1,125	1,125	-	-	△1,125	순감

1. 법적 근거

- 방송통신발전기본법 제25조(기금의 조성)

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.

1. 정부의 출연금 또는 용자금
2. 「전파법」 제7조제2항에 따른 징수금, 같은 법 제11조제1항(같은 법 제16조제4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)에 따른 주파수할당 대가 및 같은 법 제11조제5항에 따른 보증금, 같은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산정된 금액
3.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분담금
4. 방송사업자의 출연금
5. 기금 운용에 따른 수익금
6.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금

2. 수입 개요

- 기획재정부 공공자금관리기금에 예탁한 원금에서 발생한 이자수입

3. 최근 4년간 결산내역

(단위: 백만원)

연도	2018년	2019년	2020년	2021년
수납액	260	3,838	1,167	-